

#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1,575,531	22,547,266
일반회계	639,396,559	19,181,897
특별회계	112,178,972	3,365,369
기타특별회계	112,178,972	3,365,36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75,479	182,264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83,618,870	2,508,566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63,258	22,89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934,525	28,036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188,500	5,65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2,200	2,766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137,300	154,119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640,000	19,200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72	65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4,726,668	441,8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